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집행부 제출】
검 토 보 고 서



2025. 11.

기획재경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5. 11. 28.

기획재경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 제 출 자: 달서구청장(청렴감사실장)
- 제출일자: 2025. 11. 14.(금)
- 회부일자: 2025. 11. 14.(금)
- 검토기간: 2025. 11. 17.(월) ~ 11. 21.(금)

2. 제안이유

- 고충민원을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업무를 수행할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달서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동의 대상자

성 명	위촉 요건	주요경력
이대현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영남대 사학과 학사 - 매일신문 편집국 입사(1991. 2월) - 매일신문 비서실장, 편집국장, 논설실장 역임 - 매일신문 논설실장 퇴직(2024. 3월)

나. 운영 개요

- 위촉인원: 1명
- 위촉기간: 2년(1회 연임 가능)
- 근무조건
 - 근무형태: 위촉직(비공무원)으로서 주 3일 근무(09:00 ~ 18:00)
 - 활동수당: 150,000원/1일

다. 추진경과 및 계획

- 위원모집 공고 : 2025. 9. 22.~10. 13.
- 원서접수 : 2025. 10. 14.~10. 16.
- 면접심사 : 2025. 10. 20.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 특이사항 없음
- 의회동의 후 활동 : 2026년 1월부터(예정)

4.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제34조 및 제38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및 제9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 우리 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구민의 고충해결과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 1월 10일 위원 2명을 위촉하여 구성·운영되었으며, 2024년 1월 10일부터 위원 1명으로 운영 중임. 2025년 10월 말 기준 총 68건의 고충민원을 접수·처리하였음.

- 이번에 제출된 동의 대상자는 위촉 중인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26년 1월 9일 만료됨에 따라, 신규 위촉을 위해 공개모집 계획에 따라 위원모집 공고, 원서접수, 면접심사,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를 거쳐 선정되었음. 자격요건 검토 결과,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여 자격요건에 부합함.
-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거쳐 추진된 사항으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동의 대상자가 향후 구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접수 현황〉

(단위: 건)

구분	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 10월말 현재
건 수	68	16	22	19	11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 〉

【 관 계 법 령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 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 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 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34조(활동비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 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32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하여야 한다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 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3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권한에 속하는 직 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 시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위원의 직무를 이행하지 못 하였을 경우
2.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5. 심신상의 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제6조(직무) ①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2.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사표명
3.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4.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조정·중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위임·의뢰하는 사안의 조사·처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직무로 보지 아니한다.

1. 구의회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3.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8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9조(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소속기관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이 경우 특별한 이해관계의 범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를 준용한다.